



재해보상제도 편

신규임용자를 위한 공무원연금제도



CONTENTS

01. 공무상 재해보상제도 개요

02. 재해보상급여의 종류

공무상 재해보상제도 개요



1-1. 공무상 재해보상제도

공무상 재해보상제도
개요



"화재신고를 받고 화재를 진압하러 갔다가 화상을 입은 경우"

"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?"

"폐결핵 환자인 현행범 조사 중 감염이 된 경우"



1-1. 공무상 재해보상제도

공무상 재해보상제도
개요

✓ 공무상 재해보상제도란?



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로인해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 적정한 보상을 통해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제도

부상, 질병

요양급여(치료비)

재활급여

장 해

장해급여

간병급여

사 망

순직유족급여

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

1-2. 재해보상제도 사례

공무상 재해보상제도
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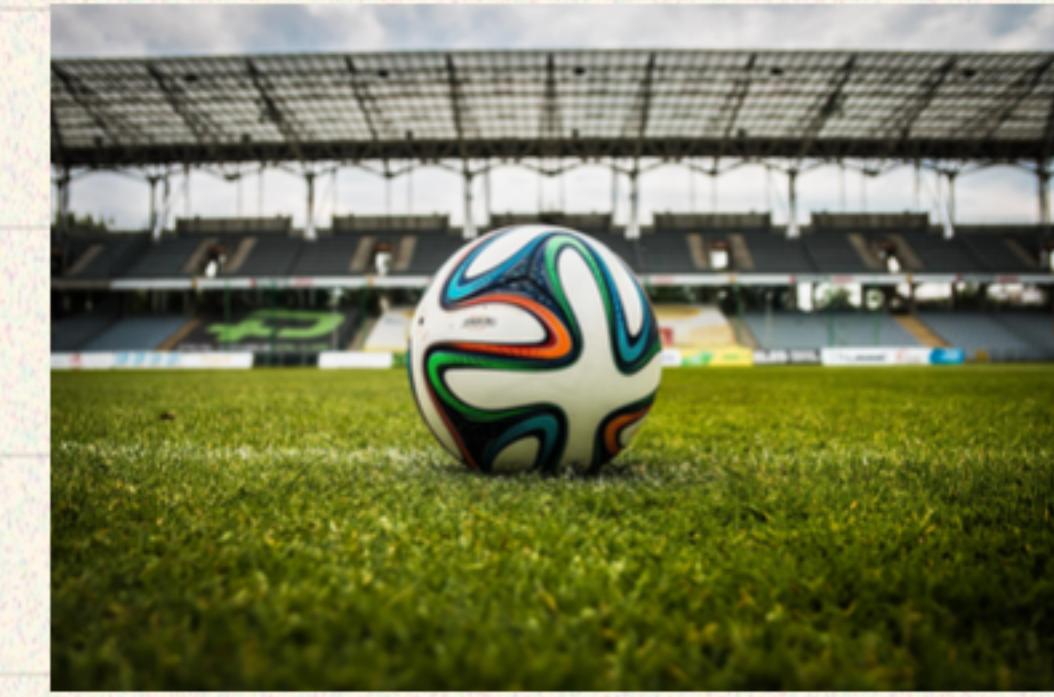
✓ 어떤 경우에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?



출퇴근길 사고



점심시간 사고



체육행사 중 사고

1-2. 재해보상제도 사례

공무상 재해보상제도
개요

✓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



출퇴근길 발생한 사고

1. 매번 다니던 경로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 중 넘어져 다친 경우
2.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
3. 퇴근길에 친구를 만나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다가 다친 경우

1-2. 재해보상제도 사례

공무상 재해보상제도
개요

✓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



출퇴근길 발생한 사고

1. 매번 다니던 경로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 중 넘어져 다친 경우 YES
2.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YES
3. 퇴근길에 친구를 만나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다가 다친 경우 NO

1-2. 재해보상제도 사례

공무상 재해보상제도
개요

✓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



점심시간에 발생한 사고

1. 점심식사를 하러가다가 빗길에 넘어져 다친 경우
2.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배드민턴을 치다가 다친 경우
3. 가르치는 학생들과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다친 경우

1-2. 재해보상제도 사례

공무상 재해보상제도
개요

✓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



점심시간에 발생한 사고

- 점심식사를 하러가다가 빗길에 넘어져 다친 경우
-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배드민턴을 치다가 다친 경우
- 가르치는 학생들과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다친 경우

YES

NO

YES

1-2. 재해보상제도 사례

공무상 재해보상제도
개요

✓ 회식이나 체육행사 중 발생한 사고



점심시간에 발생한 사고

1. 전 직원이 참석한 회식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 발생한 사고
2. 사전계획 없이 사적인 SNS로 일정 공지 후 사비로 계산된 술자리에 참석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
3. 소속 기관의 체육행사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

1-2. 재해보상제도 사례

공무상 재해보상제도
개요

✓ 회식이나 체육행사 중 발생한 사고



점심시간에 발생한 사고

1. 전 직원이 참석한 회식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 발생한 사고 YES
2. 사전계획 없이 사적인 SNS로 일정 공지 후 사비로 계산된 술자리에 참석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 NO
3. 소속 기관의 체육행사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 YES

2-1. 재해보상급여의 종류

재해보상급여의
종류

- ✓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시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급여를 지급

급여의 종류		시효
요양급여	-	3년
재활급여	재활운동비, 심리상담비	3년
장해급여	장해연금, 장해일시금	5년
간병급여	-	3년
재해유족급여	장해유족연금	5년
순직유족급여	순직유족연금, 순직유족보상금	
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	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,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	
부조급여	재난부조금, 사망조위금	3년

2-2. 요양급여

✓ 공무상 요양 승인

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공무원이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고자 할 때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음
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은 「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」에 치료기간을 명기한 진단서(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에 한함),
의무기록지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(연금취급기관)에 제출

✓ 기간연장 승인

공무상요양 승인기간을 초과하여 요양(치료)하고자 할 때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제도

✓ 추가상병 승인

최초 승인 신청시 누락되었거나 치료과정에서 새로이 생긴 질병에 대해 추가로 승인 신청하는 제도

신청기한 및 절차

- 요양급여비용 발생일부터 3년 이내
- 공무원이 소속기관(연금취급기관)에 신청하거나 소속기관의 경유없이 접 공단(재해보상실)에 신청
- 해당기관은 질병 또는 부상의 경위를 조사·확인 한 후 공단에 이송

※ 연장승인은 본인이 직접 공단에 신청

2-2. 요양급여(요양급여비용)

✓ 요양급여

- 건강보험 적용 급여와 건강보험 비적용 급여 중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서 정하는 급여 및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으로 정하는 급여를 포함
-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공무상요양(재요양, 기간연장) 승인을 받은 후 요양급여비용 중 건강보험급여는 자동환급되며, 건강보험 비적용 급여는 공단에 청구 시 상급병실료, 간호비 등의 특수요양급여가 지급됨

청구기한 및 절차

- 급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
(요양승인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승인결정일로부터 3년, 요양승인결정일 이후
요양승인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매 요양일로부터 3년내 청구)
- 공무원이 직접 공단(재해보상실)에 청구

구비서류

- 요양급여비용 청구서
- 진료비계산서 또는 영수증
- 진료비(비급여) 세부내역서(건강보험청구 코드 기재), 기타 간호기록지 사본 등

2-3. 재활급여

재해보상급여의
종류

재활운동비

공무상 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」 제38조 제1항에 따른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이 수영, 요가 등 재활운동을 한 경우 해당 비용을 월 10만원 이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지급

심리상담비

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을 한 경우
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」 제39조에 따라 해당 비용을 3개월 이내 최대 10회, 회당 1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급
심리상담비는 미리 심리상담 승인을 받아, 심리상담전문기관에서 상담을 실시한 후 청구 가능

2-3. 재활급여(청구기한, 절차, 구비서류)

재해보상급여의
종류

청구기한 및 절차

재활운동·심리상담일로부터 3년 이내 공무원이 직접 공단(재해보상실)에 청구

구비서류

- 재활운동비
청구서, 영수증, 출석확인서, 운동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, 의사소견서(필요에 따라 공단 요청 시 제출), 합의서(가해자가 있는 경우 제출)
- 심리상담비
1) 승인신청시 : 승인신청서, 다차원심리검사지(L형), 의무기록지(필요에 따라 공단 요청 시 제출)
2) 비용청구시 : 청구서, 영수증, 출석확인서, 상담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, 상담사 자격증 사본, 합의서(가해자가 있는 경우 제출)

2-4. 장해급여

재해보상급여의
종류

✓ 장해연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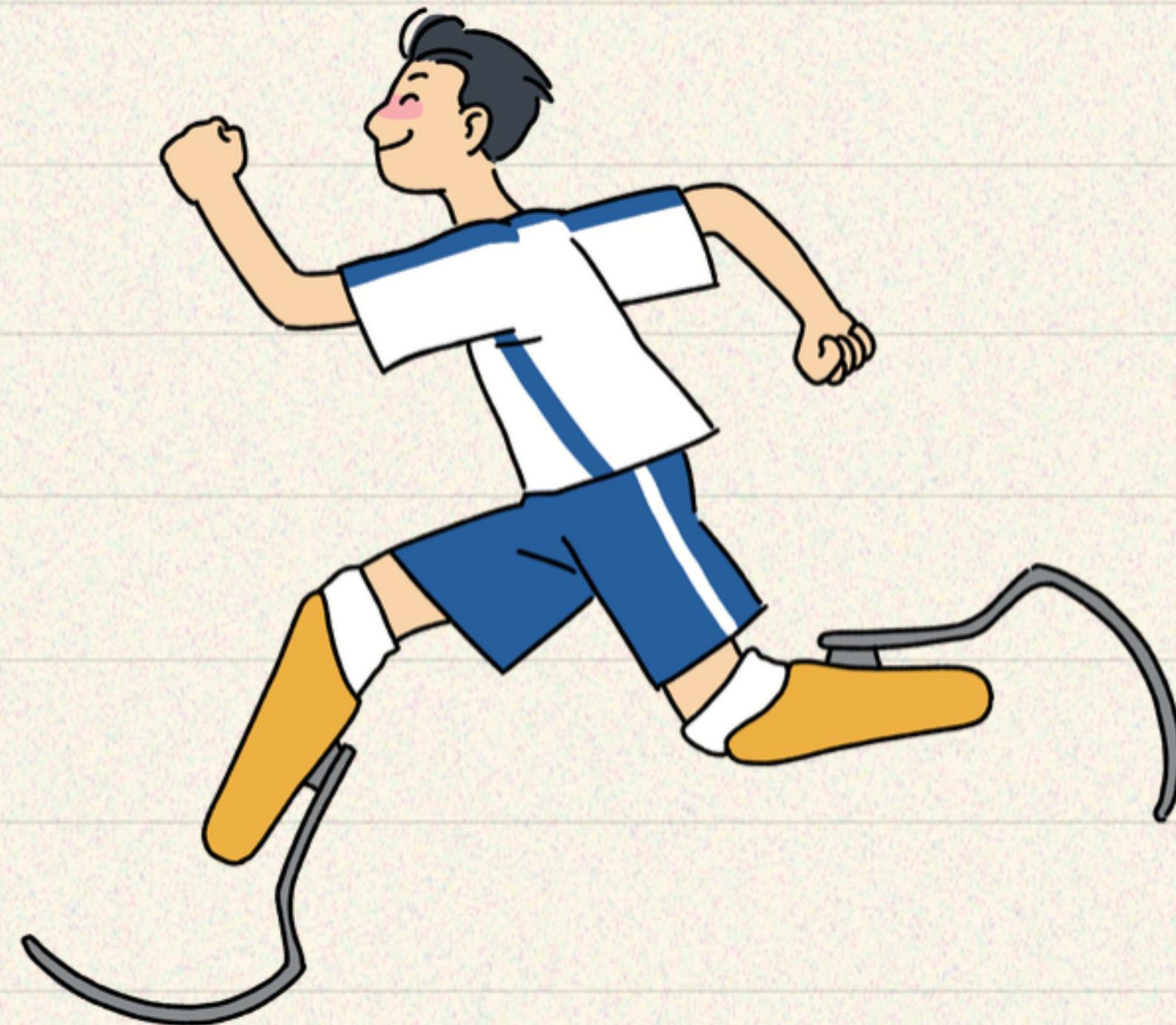
장해등급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(사망시 유족에게 60% 승계)

※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52% ~ 9.75%

※ 「공무원연금법」의 퇴직급여와 함께 지급

✓ 장해일시금

5년분의 장해연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(1회만 지급)



2-4. 장해급여(청구기한, 절차, 구비서류)

청구기한 및 절차

퇴직 후 장해확정 시 : 장해확정일부터 5년 이내

장해확정 후 퇴직 시 : 퇴직일부터 5년 이내

퇴직 당시 소속기관(연금취급기관)경유 공단(재해보상실)에 청구

구비서류

1. 청구인

- 장해급여 청구서
-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
- 공무원 재해보상 척추 및 신경계통기능 장해소견서 또는 관절운동 장해소견서

2. 소속기관(연금취급기관)

- 장해경위조사서

※ 요양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아래자료 별도 제출

-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(청구인)

- 건강진단결과통보서 및 문진표 사본(발병전 2회분, 내과질환에 한함)(청구인)

- 공무상 질병·부상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(소속기관)

2-5. 간병급여

재해보상급여의
종류

✓ 간병급여

공무상 요양을 마친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서 정하는 간병급여를 지급

✓ 간병급여 지급기준금액(1일당)

구 분	상시간병급여	수시간병급여
전문간병인	44,760원	29,840원
가족·기타간병인	41,170원	27,450원

※ 해당 기준은 고시 시행일('21.1.1.) 이후에 이루어진 간병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'20.12.31. 이전에 이루어진 간병에 대해서는 종전의 간병급여 지급기준(간병인 유형에 관계없이 상시 간병급여 일 41,170원, 수시 간병급여 일 27,450원)을 적용

2-5. 간병급여(청구기한, 절차, 구비서류)

청구기한 및 절차

간병급여 발생일부터 3년 이내
공무원이 직접 공단(재해보상실)에 청구

구비서류

- 간병급여 청구서
-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(최초 간병급여 청구 시에만 제출)
- 간병 비용에 관한 증빙서류
- 전문간병인(간호사, 간호조무사, 요양보호사 등) 자격증
- 가족관계증명서(간병한 가족이 전문간병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)
- 간병급여 심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

2-6. 순직유족급여

✓ 순직유족급여

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때 지급

✓ 순직유족급여 지급 기준

순직유족보상금 : 사망 당시(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 당시)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금액

순직유족연금 : 사망 당시(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 당시)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8% + 5~20%(유족가산금),
최대 58% 가능

유족가산금 : 유족 1인당 5% 씩 최대 20% 가산

✓ 순직유족급여 최고·최저 보상기준

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최소 0.5배 ~ 최대 1.6배

2-6. 순직유족급여(청구기한, 절차, 구비서류)

청구기한 및 절차

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

사망 당시 소속기관(연금취급기관) 경유, 공단(재해보상실)에 청구

구비서류

1. 청구인

- 순직·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
- 사망진단서(또는 사체검안서)
-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
- 유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 등)
- 유족대표자 선정서

2. 소속기관

- 사망경위조사서
- 건강진단결과통보서 및 문진표 사본(발병전 2회분, 내과질환에 한함)
- 공무상 질병·부상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

2-7.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

재해보상급여의 종류

✓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

-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 중 재해를 입고,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때,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
- 범인체포, 대간첩·대테러 작전 수행,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, 화재진압, 인명구조, 경호업무, 감염병의 확산방지, 산불진화, 국외에서 입은 재해 등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

✓ 순직유족급여 지급 기준

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: 사망 당시(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 당시)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43% + 5~20% (유족가산금), 최대 63%

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: 사망 당시(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 당시)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(대간첩작전 중 사망 : 60배)

※ 유족가산금 : 유족 1인당 5% 씩 최대 20% 가산

✓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최고·최저 보상기준

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최소 0.5배 ~ 최대 1.6배

2-7.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(청구기한, 절차, 구비서류)

청구기한 및 절차

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

사망 당시 소속기관(연금취급기관) 경유, 공단(재해보상실)에 청구

구비서류

1. 청구인

- 순직·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
- 사망진단서(또는 사체검안서)
-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
- 유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 등)
- 유족대표자 선정서

2. 소속기관

- 사망경위조사서
- 건강진단결과통보서 및 문진표 사본(발병전 2회분, 내과질환에 한함)
- 공무상 질병·부상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서류

2-8. 재난부조금

재해보상급여의
종류

✓ 재난부조금

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수재나 화재,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소실·유실·파괴되어 손해를 입은 때 재난으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재해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.3배 ~ 3.9배 지급

✓ 재난부조금 지급 기준

구 분	지급기준
완전히 소실,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	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.9배
1/2 이상이 소실,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	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.6배
1/3 이상이 소실,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	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.3배

※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급여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

2-8. 재난부조금(청구기한, 절차, 구비서류)

청구기한 및 절차

- 재난발생일부터 3년 이내
- 국가직 공무원은 공단 지부에 청구
※ 소방공무원은 해당 소방서 또는 소방본부에 청구
- 지방직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청구
- 교육직 공무원은 해당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청구

구비서류

- 재난부조금 청구서
- 피해상황확인서(특별자치도지사, 특별자치시장, 시장, 군수, 구청장 또는 소방서장 발행)
- 건축물대장
- 주민등록표등본 (공무원 상시 거주 주택으로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한함)

2-9. 사망조위금

✓ 사망조위금

-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(배우자의 부모 포함)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당해 공무원에게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
- 공무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
배우자에는 사실혼을 포함(대법원 판례선고일인 2019.11.14. 이후 급여 지급사유 발생건)하며,
- 공무원(또는 배우자)의 조부모, 외조부모, 계부모, 손자녀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미지급

2-9. 사망조위금(청구기한, 절차, 구비서류)

청구기한 및 절차

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
공단홈페이지 종합재해보상시스템을 통해 청구하면,
- 국가직 공무원(공중보건의 포함)은 공단 지부에서 지급
- 소방·지방·교육직 공무원은 소속기관에서 지급

구비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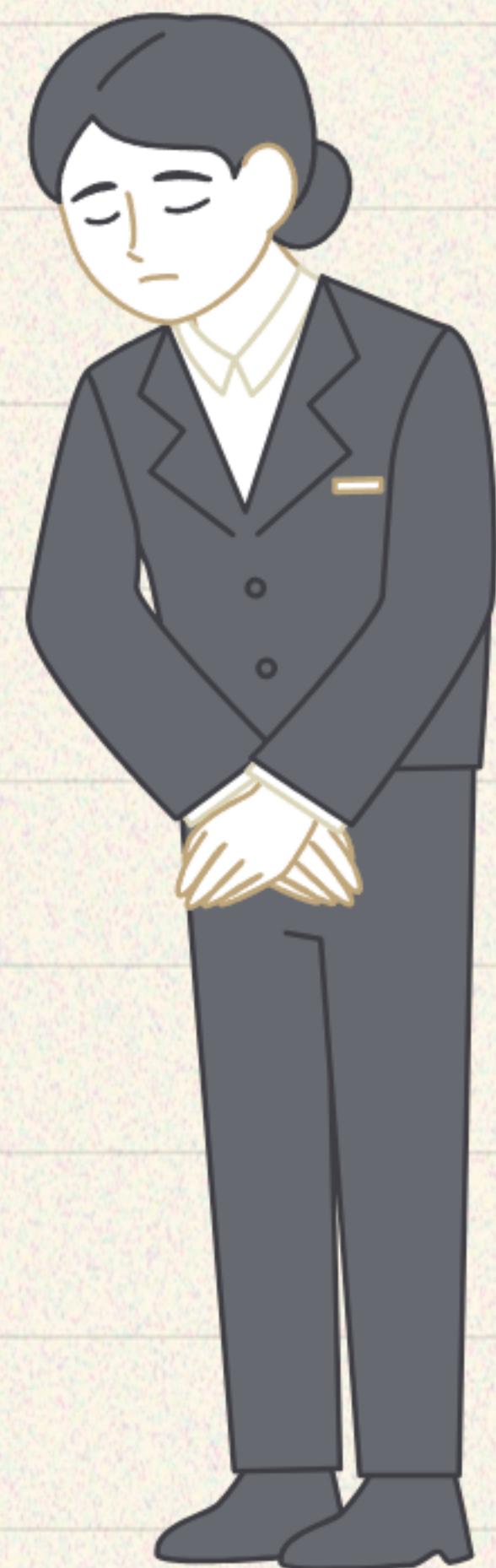
- 사망조위금 청구서
-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)
- 사망자의 기본증명서(사망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첨부)
- 혼인관계증명서(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)
-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(사실혼 배우자 및 그 부모 사망시)

2-10. 공무수행사망자 지원 제도

재해보상급여의
종류

✓ 공무수행사망자 지원 제도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수행사망자 인정기준과 특례 조항 등이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에 새롭게 마련
- 공무수행사망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할 경우, 순직 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과 이에 따른 급여(사망조위금 제외) 및 예우 적용



2-10. 공무수행사망자 지원 제도

재해보상급여의
종류

✓ 보상 및 예우

1. 경제적 보상

- 경제적 보상은 현행 『산업재해보상보험법』 등을 그대로 유지
-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더라도 순직유족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,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위험직무순직유족 보상금만을 추가로 지급

2. 보훈 등 예우 지원

- 『국가유공자법』의 국가유공자, 『보훈보상자법』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, 국가보훈처의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자로 인정될 경우 해당법상의 교육·취업 등의 지원



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